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단607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이정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지승, 이광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5. 24. 접수 제29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및 음료수의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외 C에게 2014. 10. 23.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4.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음식점에 26,297,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17,077,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과 주류대금 합계액 26,077,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2020. 10. 8. 원고의 청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20차462 대여금 등,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0. 15.경 C의 주민등록지인 강원 횡성군 F로 송달되어 2020. 10. 30.경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8.경 전소유자인 G와의 2014. 4.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5. 24.경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5. 24. 접수 제293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염가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 포함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는 C의 딸이자 피고의 언니인 H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차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C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그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2011. 3.경 전소유자 G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어서 C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 2016. 5. 24.경 실제 소유자였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C은 1968. 10.경부터 1990. 6.경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1990. 6.경부터 2020. 4.경까지 원주시에, 2020. 4.경부터 2021. 1. 현재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었고, 2011년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6. 5.경의 주민등록지는 원주시 I아파트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C은 서귀포시 D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반면, 피고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H가 원고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C이 아닌 피고의 거주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2)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실제 당사자는 C의 딸인 H인데, H가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2014. 10. 23.자 차용증(갑 제3호증)에도 실제 거래상대방인 H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점을 보면,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C에게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리거나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H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2014. 2.경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C의 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C 명의로 이전된 시점은 2014. 4.경인바, 만일 H의 신용상태나 H가 C 명의로 거래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가 2011. 3.경부터 거주하고 있고 C은 거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태여 C의 명의로 이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운

[별지]**부동산의 표시****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523.92㎡

2층 523.92㎡

3층 528.92㎡

4층 523.92㎡

5층 523.92㎡

지층 23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L호

84.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원주시 J

대 1030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0303분의 64.785

